

## 책임준공확약서

수신: 주식회사 위편딩대부 및 주식회사 위편딩

이 책임준공확약서(이하 “이 확약서”)는 이■■■■, 이■■■■ (이하 “차주”)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570-11,12,13,14 및 위지상 주택신축사업 (이하 “본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주로서 주식회사 위편딩대부 및 주식회사 위편딩(이하 “대주”), 시공사로서 주식회사 ■■■■■ 개발(이하 시공사를 통틀어 “당사”),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식회사 ■■■■■ 개발 사이에서 2018년 8월 23일 체결한 대출약정금 금십오억원(W1,500,000,000)의 대출약정서(이후 수정, 변경, 추가된 것을 포함하고 이하 “대출약정서”)와 관련됩니다. 이 확약서에서 사용된 모든 용어는 이 확약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출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보유합니다.

당사는 본건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1. 당사는 2019년 5월 30일 이내(이하 “책임준공기간”)에,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사가 차주 또는 신탁회사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정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기타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절차(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정후기업의 관리 등 부도사유 포함)의 개시 등의 사유, 또는 공사비 지급 지연, 공사도급계약의 불이행, 민원, 인허가의 지연 또는 보완 등 기타 여하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할 수 없고, 미시공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제외한다)을 완료하여야 하고, 사용승인필증의 사본을 대주에게 제출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 당사는 사업건물이 신축될 예정인 사업부지의 상태(사업부지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포함함)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검토를 하였고, 사업부지가 사업건물을 건설하는데 법적·사실적으로 적정한 부지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사업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의 비용과 책임하에 이를 보수할 것이며 만약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차주 기타 대주가 지정하는 제 3 자가 당사의 비용으로 위 하자를 보수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4. 당사는 사업건물의 건설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소음, 분진 등), 안전사고, 인근시설 및 주민을 포함한 제 3 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 및 손실 기타 제반민원에 따른 일체의 사항들을 당사의 전적인 책임하에 처리할 것입니다.



5. 당사가 이 확약서에 기한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대출약정에 따른 차주의 피담보채무를 손해배상액으로 대주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 6. 당사의 확인사항

- ① 당사는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확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를 취하였고 이 확약서는 유효하게 당사를 구속합니다.
- ② 이 확약서의 작성, 체결 및 이행은 관련법령, 당사의 정관 또는 당사가 체결하였거나 당사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기존의 계약 또는 약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 ③ 당사는 당사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에게 구속력이 있는 모든 약정상, 당사의 영업, 재산 또는 재정상태에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불이행상태가 아닙니다.
- ④ 당사의 영업활동 또는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이 계속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법적 절차가 개시될 우려도 없습니다.
- ⑤ 이 확약서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주에게 제시한 당사에 관한 모든 정보는 정확합니다.
- ⑥ 당사는 대주가 당사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개설된 가상계좌를 통해 공사비를 집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이 확약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출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이 확약서와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확약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8. 이 확약서는 이 확약서의 수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당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또는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철회, 변경 또는 취소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확약서의 수신인이 대출약정서상의 지위 또는 권리를 제 3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는 경우 이 확약서는 당사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위 제 3 자에게도 동일하게 그 효력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12일

확약인:

주식회사 ■■■■■ 개발

서울특별시 ■■■■■ (마곡동, ■■■■■)

대표이사 윤■■■■

